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7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김 건 · 김기웅 · 임종득
최보운 · 박충권 · 박정하
서일준 · 정성국 · 임이자
김성원 · 엄태영 · 최수진
이주영 · 안철수 · 강선영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반도체 · 인공지능 · 양자기술 등 핵심전략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외교 · 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주요국들이 자국의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국제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통

한 국제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외교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 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과학기술과 외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과학기술외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인류 공동번영 기여, 개방성과 협력에 기반한 국제연대 강화,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존중, 과학기술 윤리 및 국제규범 준수, 과학기술주권 확립 등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정부는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연구개발 시설·장비 및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개발도상국 지원, 국제기구 진출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정부는 기술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자립도 제고,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 국제협력 과정에서 기술안보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하며,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정부는 국제기술표준화 협력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술표준기구 활동 지원, 국제기술 표준의 조사·연구개발·보급·확산,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정부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재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도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국제기구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함(안 제15조).

자. 정부는 과학기술외교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과 외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및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기반 국제질서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외교”란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외교 활동을 추진하거나, 외교를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을 의제로 한 양자·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나. 과학기술 분야별 국제규범 형성 및 준수

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지구적 문제 해결

라. 경제안보·군사안보 등 안보적 함의가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대응

마. 제12조에 따른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활동

바. 그 밖에 외교전략 추진 목적상 활용되는 제반 과학기술 관련 활동

2. “기술안보”란 국내외 경제·통상·정치·외교적 상황 변화와 과

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이 안정적으로 확보·보호되고, 기술유출 및 과도한 대외 의존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과학기술외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외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외교정책 기조 및 전략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하여 인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3. 개방성과 협력에 기반하여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4. 과학기술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제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5. 과학기술 윤리 및 공공성을 존중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한다.
6.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과학기술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과학기술외교 시책에 따라 지역의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한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외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추진계획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외교 관련 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제1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외교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외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외교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된다.

②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과학기술외교 자문단) ① 위원회는 과학기술외교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기술외교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과학기술외교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과학기술외교를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술안보 확보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 분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외교를 위한 기반조성,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외교에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것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과학기술외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①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2.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3.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외국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4. 연구개발 시설·장비, 과학기술지식·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6.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
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7. 국제기구 및 국제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자간 과
학기술협력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술안보 확보 등) ① 정부는 기술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자립도 제고
2. 기술 관련 국제규범 및 통상규제에 대한 대응
3. 국제협력 과정에서의 기술안보 점검 및 관리
4. 기술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기술안보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술안보 관련 국제통상 분쟁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기술표준) 정부는 국제기술표준화 협력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기술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술표준기구 활동 지원
2. 국제기술표준의 조사·연구개발·보급·확산
3. 국제기술표준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국제교류
4. 그 밖에 국제기술표준화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재외공관의 역할 등) ①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수행하며,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과학기술외교 활동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재국의 과학기술 동향에 관한 보고
2. 주재국내 과학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참석 및 결과 보고
3. 주재국 정부기관 및 주재국내 전문가 등과의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
4. 공동연구개발 협력사업 발굴
5. 과학기술 관련 공공외교 활동

6. 과학기술 분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확대 지원
 7.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국제교류 지원
 8.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국제행사·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지원
 9. 국제 표준·규범의 제정·개정 과정 참여
 10. 그 밖에 과학기술외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중 특히 과학기술외교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재외공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지정·운영에 있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재외공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활동을 포함하는 과학기술외교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과학기술외교 활동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국제교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해외 과학기술 인재 네트워크 구축 등) ① 정부는 해외 거주 한국인 과학기술 전문가 및 외국 과학기술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과학기술외교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과학기술외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

학기술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